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4.	조례	제1105호				
개정	1992.	3.	12.	조례	제1157호				
개정	1992.	11.	28.	조례	제1185호				
개정	1993.	7.	23.	조례	제1268호				
개정	1994.	8.	12.	조례	제1320호				
개정	1995.	6.	12.	조례	제1368호				
개정	1995.	8.	21.	조례	제1375호				
개정	1996.	8.	28.	조례	제1510호				
개정	1998.	6.	30.	조례	제1574호				
개정	1998.	9.	10.	조례	제1579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640호				
개정	1999.	11.	4.	조례	제1656호				
개정	2002.	7.	4.	조례	제1784호				
개정	2003.	10.	31.	조례	제1845호				
개정	2004.	12.	13.	조례	제1879호				
개정	2006.	2.	24.	조례	제1983호				
개정	2006.	6.	28.	조례	제2006호				
개정	2006.	7.	27.	조례	제2018호				
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개정	2008.	9.	30.	조례	제2113호				
개정	2008.	11.	10.	조례	제2122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8호				
일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0.	11.	8.	조례	제2280호				
일부개정	2011.	5.	19.	조례	제2324호				
일부개정	2011.	8.	5.	조례	제2334호				
일부개정	2012.	2.	29.	조례	제2389호				
일부개정	2013.	4.	25.	조례	제2464호				
일부개정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2600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3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4호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29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7호	(안양시	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82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400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60호				
일부개정	2023.	11.	8.	조례	제3572호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2.	24.	조례	제38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와 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08. 9. 30., 2013. 4. 25., 2021. 12. 30.>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 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7. 27.]

제2조의2(지원 등) 의장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2조의3(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8., 2026. 2. 24.>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복지환경위원회 8명 이내
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

[중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0. 1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3. 10. 31., 2004. 12. 13., 2006. 2. 24., 2006. 12. 29, 2007. 9. 20, 2008. 7. 7, 2009. 10. 7., 2010. 6. 28., 2010. 11. 8.>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2. 29., 2013. 4. 25., 2014. 1. 2., 2014. 11. 14., 2015. 2. 27., 2016. 2. 18., 2016. 6. 17., 2017. 5. 18.,

2018. 5. 3., 2018. 10. 5., 2019. 3.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6. 2. 24.>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AI전략국,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안양도시공사의 운영, 체육시설, 상가업무, 냉동 제빙동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에 관한 사항

3. 복지환경위원회

-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만안구 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

4. 도시교통위원회

- 가.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안양도시공사의 주차관리, 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상임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4.>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2. 7. 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 4. 2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5.>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3. 4. 25.>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11. 8. 5.>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

[본조신설 2011. 8. 5.]

제8조(특별위원회와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4. 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0. 10.>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06. 7. 27., 2013. 4. 25., 2023. 10. 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 9. 30.>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안양시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1977. 3. 26 안양시 조례 제235호)는 폐지한다.

부칙 <92. 3. 12. 조례 제115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초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부칙 <92. 11. 28.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2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8. 12.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12. 조례 제136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대 안양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칙 <95. 8. 2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8. 28. 조례 제151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획경제위원회·내무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98. 6. 30.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30. 조례 제157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보사위원회, 총무재정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99. 6. 14. 조례 제164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운영보사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99. 11. 4. 조례 제165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경제위원회 및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총무경제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2. 7. 4.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0. 3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7. 조례 제201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08. 9. 30. 조례 제2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예회관”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로 한다.

부칙 <2010. 11. 8.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9.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23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
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 2. 29.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책추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나목 중 “녹지공원과”를 “녹지과”, “공원관리과”로,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5. 2. 27.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3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도시재생정책관”을 삭제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녹색성장과”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하고, “홍보실, 감사실”을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로 한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청년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7호,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원관리과), 도로교통사업소”를
“공원관리과”)로 한다.

가.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사항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로교통
국”을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으로 하
며,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를 “하천녹
지사업소”로 한다.

나.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만안구보건소, 동안
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시설공사과”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4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조례 제3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을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

과, 대중교통과)”을 “도로교통국, 환경국(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26. 2. 24. 조례 제3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로 한다.